

의안 번호	2182	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1. 9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1. 9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6.(수)

### 2. 제안이유

- 주요세입 감소 및 대규모 사업 추진 예정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, 전액을 상환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(안)을 의결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기금조성액 (단위: 천원)

계정	2023년도 말 조성액(A)	2024년도 조성계획			2024년도 말 조성액(A+D)
	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총계	23,105,517	228,184	22,301,101	△22,072,917	1,032,600
통합	22,072,917	228,184	22,301,101	△22,072,917	0
재정안정 화	1,032,600	0	0	0	1,032,600

- 수입계획
  - (통합계정)
    - 공공예금 이자수입: 228,184천원
    - 예치금 회수: 22,072,917천원
  - (재정안정화계정) 예치금 회수: 1,032,600천원
- 지출계획
  - (통합계정) 예수금 원리금상환: 22,301,101천원
  - (재정안정화계정) 예치금: 1,032,600천원

##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8조 및 제16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주요세입 감소 및 대규모사업 추진 예정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**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9.]